

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

강 사 : 박상혁

교육일시 : 2024. 11. 04(월), 16:30~17:30

목차

1. 노인인권

- 인권이란?
- 노인인권이란?
- 인권 실천
-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

2. 노인학대

- 노인학대란?
- 노인학대의 종류
-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.

3. 신체구속 사유와 절차

- 신체구속 사유
- 신체구속 절차

노인인권

1. 인권이란?

-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,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.

2. 노인인권이란?
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.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.

3. 인권 실천

- 나이, 연령, 성별,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'나'와 '타인'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.



노인인권

4.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

-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
- 1)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2)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3)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4)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5)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- 6)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7) 정치,문화,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8)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9)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10) 시설 내.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11)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노인학대

1. 노인학대란?

-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.

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

한겨울 노부모 냉방에 가둬 방치 _중앙일보

욕실에 주먹질·발길...아들이 노부모 상습폭행 _국민일보

노인 자녀에게 학대 받는 노인 부모 늘었다 _SBS

학대로 피멍 든 노인들 “그래도 내 자식인데...” _연합뉴스

노인학대

2. 노인학대의 종류

1) 신체적 학대

-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.
- 어떤 행위가 신체적 학대일까요?
 -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.
 - 주먹 등으로 때린다.
 - 밀어서 넘어뜨린다.
 -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
 -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.
 -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.
 -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.
 -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.



노인학대

2. 노인학대의 종류

2) 정서적 학대

-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-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일까요?
 -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.
 -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.
 -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.
 -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.



노인학대

2. 노인학대의 종류

3) 성적 학대

-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.
- 어떤 행위가 성적 학대일까요?
 -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.
 -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.
 -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.



노인학대

2. 노인학대의 종류

4) 경제적 학대

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.
- 어떤 행위가 경제적 학대일까요?
 -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.
 -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.
 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.



노인학대

2. 노인학대의 종류

5) 방임

-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.(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)
- 어떤 행위가 방임일까요?
 -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.
 -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.
 -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.
 -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.



노인학대

2. 노인학대의 종류

5) 유기

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.
- 어떤 행위가 방임일까요?
 -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.
 -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.
 - 낯선 장소에 버린다.



노인학대

3.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

1) 노인학대의 예방

① 시설의 역할

-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,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, **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.**
- 시설내 **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**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.
-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(노인보호전문기관)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.

노인학대

3.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

1) 노인학대의 예방

② 종사자의 역할

-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규정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
-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.
-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.
-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
노인학대

3.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

2) 노인학대의 대응

① 최초 발견

- 어르신을 해당상황에서 분리, 안전한 장소로 이동.
- 증거확보(녹음, 상처부위 사진, CCTV 등)
-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진행.

② 상부에 보고(과장, 국장, 원장)

③ 시설은 피해현장 및 어르신, 가해자, 목격자 등 확인

④ 보호자 상담

⑤ 절차에 따라(인사 위원회 등) 징계. (견책, 감봉, 해고 등)

⑥ 상황이 위중하거나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경우 1577-1389(노인보호전문기관), 112 등에 신고.

노인학대

3.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

3) 횡성군노인전요양원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

- 입구에 비치된 TV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제작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을 매일 송출.
- 주 2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송을 실시.
- 매주 월요일 업무회의 시간 마다 노인학대 예방관련사항 및 존대어 사용에 대해 공지.
- 생활관 내 벽면에 노인학대 신고번호 및 학대 사항에 대해 게시.
- 노인학대 신고함 운영.
- 노인인권교육 : 1년 1회, 4시간(인터넷 강의 6시간)
- 노인학대예방 교육 : 분기별 1회, 1시간
-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: 1년 1회, 1시간

신체구속사유와 절차

1. 신체구속사유

- **절박성** :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
- **비대체성** :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
- **일시성** :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실시

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됨

수급자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를 받거나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

신체구속사유와 절차

2. 신체구속 절차

1) 시행 전 절차

- 업무일지(요양, 간호, 복지 등)에 **관련 내용이 자주 기록**.
(낙상 위험, 공격적인 행동, 꼭 필요한 처치거부)
- 대상 어르신의 **사례회의 혹은 진료** 진행
- **시설장 결재, 의사소견서**
- **보호자 동의**. (보호자 동의가 없는 경우 실시할 수 없음.)

2) 시행 후 절차

- **기록** : 육하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기록 (날짜, 시간, 억제대 사용 이유, 대상자 반응, 부작용, 대상자 이름, 담당자 이름)
- **30분마다** 억제대 상태와 맥박, 피부색, 체온을 관찰한다
- **2시간마다** 억제대를 풀어 관절범위운동과 피부상태 관찰 및 체위변경.
- **8시간마다** 억제대가 계속 필요한지를 **재사정**.